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 관련 859 제안년월일: 2015년 12월 17일

제 안 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통합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사항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, 위원
 중 일자리 담당국장의 직위를 정비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가. 추천 위원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함(안 제11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다. 기 타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제2항제2호 중 "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시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"을 "서울특별시의회 의원"으로,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"서울특별시 일자리기획단장 및 재정기획관"을 "서울특별시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"으로 한다.

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정안
제5조(입학자격 등) ①	제5조(입학자격 등) ①	제5조(입학자격 등)
(생략)	(현행과 같음)	① ~③(개정안과 같음)
② 제1항의 자격을 갖	② 제1항의 자격을 갖	
춘 사람 중 시장은 다	춘 사람 중 시장은 다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	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	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	
선 입학하게 할 수 있	선 입학하게 할 수 있	
다.	다.	
1.~5. (생략)	1.~5. (현행과 같음)	
6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	6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	
법」제2조제11호에	법」제2조제10호에	
따른 차상위 계층	따른 차상위 계층	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	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	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사람은	나에 해당하는 사람은	
시장이 인정하는 경우	시장이 인정하는 경우	
직업교육훈련시설에 입	직업교육훈련시설에 입	
학 할 수 있다.	학 할 수 있다.	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
〈신 설〉	4.「국가기간전략산업	
	직종훈련」 및 「지	
	역산업맞춤형 인력	
	양성사업」등 정부의	
	인력양성사업에 참	
	여하는 교육훈련생	
〈신 설〉	제10조(통합운영위원회	제10조(개정안과 같음)
	설치 및 기능)	

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 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관리를 위하여 서울 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 라 한다)를 둔다.

- 1. 서울특별시 기술교 육원의 합리적 운영 및 통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
- 2. 새로운 직업교육훈 런정책 도입 및 개 선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
- 〈신 설〉제11조(위원회의 구성 제11조(위원회의 구성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하다.
 - 1. 직업교육훈련 관련 1. (개정안과 같음) 학계, 전문가, 시민 단체, 관련기관 대표 등 직업교육훈련에

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

- 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- 식견과 전문성, 경험 이 풍부한 자
- 2. 서울특별시의회 기획 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경제위원회 소속 시 의원중 의장이 추천 하는 의원
- 3. 서울특별시 일자리 3. 서울특별시 일자리 기획단장 및 재정기 획관
- 4. 서울특별시 기술교육 4. (개정안과 같음) 원 원장
- ③ 위원장은 외부 위원 ③~④(개정안과 같음) 중 호선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주무부서 의 장으로 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. 1회에 한해 연 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 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 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다.
- 〈신 설〉제12조(위원의 수당 및제12조(개정안과 같음) 여비) 회의에 참석한 위 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은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 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

- 업무 담당 국장 및 재정 업무 담당 국장

- ① 수탁자는 직업교육 ① 수탁자는 직업교육 훈련시설의 일부를 사 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이 위탁한 직업교 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 용료를 부과·징수한다. 용료 부과·징수는 운동 장 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등을 위한 직 업교육훈련시설에 한한 다.
- ②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 료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를 따른다.

제10조(시설사용료 등) 제13조(시설사용료 등) 제13조(개정안과 같음)

훈련시설의 일부를 사 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이 위탁한 직업교 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 는 절차에 따라 사용승 는 절차에 따라 사용승 인을 할 수 있으며, 사 인을 할 수 있으며, 사 용료를 부과·징수한다. 이 경우 사용승인과 사 이 경우 사용승인과 사 용료 부과·징수는 운동

> ②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 료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> 장 또는 국가기술자격

검정시험 등을 위한 직

업교육훈련시설에 한한

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6호 중 "제2조제11호"를 "제2조제10호"로 하며 제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」및「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」 등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교육훈련생

제10조를 제13조로 하고,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통합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관리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- 1. 기술교육원의 합리적 운영 및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
- 2.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정책 도입이나 개선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직업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사항

- 제11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직업교육훈련관련 학계, 전문가, 시민단체, 관련기관 대표 등 직업훈련에 식견과 전문성, 경험이 풍부한 자
 - 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 - 3. 서울특별시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 및 재정 업무 담당 국장
 - 4.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원장
 -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.
 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- 제12조(위원의 수당과 여비)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은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개 정 안 혀 햇 제5조(입학자격 등) ① (생략) 제5조(입학자격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시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시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우선 입학하게 할 수 있 하는 사람을 우선 입학하게 할 수 있 다 다 1.~5. (생략) 1.~5. (현행과 같음) 6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 6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 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시설에 인정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시설에 입학 할 수 있다. 입학 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「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」 〈신 설〉 및 「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」등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교육훈련생 〈신 설〉제10조(통합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(이하 '위 원회'라 한다)를 둔다. 1.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의 합리적

운영 및 통합관리 지원에 관한

사항

- 2.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정책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직업교육훈련사업에 필요 한 사항
- 〈신설〉
 제11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

 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직업교육훈련 관련 학계, 전문가, 시민단체, 관련기관 대표 등 직업 교육훈련에 식견과 전문성, 경험이 풍부한 자
 - 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 - 3. 서울특별시 일자리 업무 담당 국 장 및 재정 업무 담당 국장
 - 4.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원장
 - ③ 위원장은 외부 위원중 호선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.
 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- (신설) 제12조(위원의 수당 및 여비)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

	여비에 관한 규정은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를 따른다.
<u>제10조</u> (시설사용료 등) ① ~ ② (생략)	<u>제13조</u> (시설사용료 등) ① ~ ② (현행 과 같음)